

의안번호	2218486
의 퇴 인	신성범 의원
회 답 일	2026. 5. 14.
추 계 번호	26F226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종교단체의 공익적 목적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0조제7항(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)	○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제도 신설 － 대상: 종교단체가 취득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－ 특례내용: 취득세 85% 감면 ※ 개정안의 취득세 면제 조항에도 불구하고 동 법 제177조의2에 따라 85%의 감면을 적용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0조제7항(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시 취득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경우, 취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50조제7항 신설)
- 개정안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 중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규정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신설

- 단, 동 법 제177조의2(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)에 따라 개정안의 취득세 면제조항에도 불구하고 85%의 감면을 적용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 향후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 관련 취득세 납세규모와 취득 부동산 중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의 비중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 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향후 종교단체가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의 규모 및 취득세 납세규모를 추정하여야 하나, 종교단체의 부동산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 -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종교단체는 70,930개가 등록되어 있으나, 이들 종교단체의 부동산 취득 규모 및 취득세 납세규모 등에 대한 자료가 부재

[표 1] 종교단체 현황: 2020~2024년

(단위: 개)

연도	2020	2021	2022	2023	2024
종교단체 수	72,260	71,319	70,964	70,507	70,930
- 불교	12,597	12,676	12,664	12,617	12,692
- 기독교	55,767	54,717	54,360	53,846	54,094
- 천주교	2,066	2,061	2,067	2,068	2,065
- 민족종교	821	836	836	874	884
- 기타	1,009	1,029	1,037	1,102	1,195

자료: 국가데이터처, 「전국사업체조사」, 각 연도

- 또한, 향후 종교단체의 취득 부동산 중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비중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,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 - 개정안에 따라 공익적 목적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움
 -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는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¹⁾에 따른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이 존재하나, 관련하여 종교단체에 속한 부설주차장의 면적, 공시지가 등에 대한 자료는 부재

1)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(서울특별시조례 제10047호, 2026.3.30.) 등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